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3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5누543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redacte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edacted])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redacted] |
| 피고, 항소인 |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7220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4. 28. |
| 판 결 선 고 | 2016. 6. 9. |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0,60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62,0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6,92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956,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72,599,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0,332,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0. 원고[1]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0,606,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36,92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172,599,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의 "쟁점면적 중에서 먼저"를 "쟁점면적 중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 3행의 "을 제26, 26호증의"를 "을 제25, 26호증의"로 고쳐

1) 당초의 원고 주식회사 [redacted](등록번호: 160111-0097976)은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redacted]홀딩스로 변경하고, 일부를 분할하여 2015. 3. 3. '주식회사 [redacted](등록번호: 160111-0393069)'과 '주식회사 [redacted]유통'을 각각 설립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는 모두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 [redacted](등록번호: 160111-0393069)으로 이전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쓴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이 사건 본관동"을 "이 사건 연구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 내지 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과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위 정화조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 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세목 | 본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합계 |
|---|---|---|---|---|
| 취득세 | 804,325,710 | 160,865,140 | 96,904,050 | 1,062,094,900 |
| 농어촌특별세 | 22,262,570 | | 2,693,500 | 24,956,070 |
| 지방교육세 | 116,339,960 | | 13,992,490 | 130,332,450 |
| 합계 | 942,928,240 | 160,865,140 | 113,590,040 | 1,217,383,420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2쪽 제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연구소로 사용된 비율과 지점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구분하여 연구소로 사용된 비율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차장 등은 당초부터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연구소 직원이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용도를 지점용과 연구소용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소송수계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